



수 신 회 원 사

참 조

제 목 「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」 개정·시행 안내

1. 귀 회원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2. 협회는 건설산업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「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」이 개정(국토교통부 예규 제409호)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주요내용

○ 하자보수가 불필요한 내역 명확화

- 지장물 철거, 토석의 운반, 사토 운반, 가시설공사는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규정(안 제4조 제1항)

※ 하자이행보증 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

붙임 1.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안 1부.

2.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개정 전문 1부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
회 장 조 현



담당자 주임 이준혁 과장 박진선 부장 이무열 실장 정은숙 사무처장 전성국
시 행 전건협 울산 제437호 (2026. 7. 30)

우 44726 울산 남구 삼산로 156 (달동, 전문건설회관 4층) / <http://www.kosca26.or.kr>

전화 052-256-8900 전송 052-256-8904 / 전자우편 acemy72@kosca.or.kr